

## 7 국토 · 지역개발 분야

| 개정 전  | 개정 후  |
|---|---|
| <p>&lt;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§74, 법률 제19232호 부칙 제11조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50%~100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   | <p>☞ 현행 3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50%~100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 <p>※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 포함</p>  |
| <p>&lt;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§75의2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· 재산세 50%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  | <p>☞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3년 연장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: 현행과 같음<br/>재산세 :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% 범위에서, 그 다음 3년간 25%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</li> <li>※ 조례 연계 개정 必</li> <li>○ (창업의 범위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 제10항 준용 규정 신설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 |
| <p>&lt;③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§75의4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100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   | <p>☞ 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100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 <p>※ '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' 규정(법§58-3⑥ 인용)</p>   |
| <p>&lt;④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§75의5&gt;</p> <p>1. 창업·사업장 신설용 부동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100%,<br/>재산세 100%,(2년, 이후 3년간 50%)</li> <li>○ (추징요건) 1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<br/>2년 내에 매각·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 | <p>☞ 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 면 율) 취득세 100%,<br/>재산세 100%,(2년, 이후 3년간 50%)</li> <li>○ (추징요건) 1년(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)이내<br/>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, 2년 내에 매각·<br/>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 <p>※ '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' 규정(법§58-3⑥) 인용</p>  |